

의성군의회 공고 제2021-39호

의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의성군의회의회장



의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 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시행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24조 → 제85조

3.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13일까지 의성군의회의회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의성군 의성읍 후죽5길 24 【우편번호 : 37337】

의회사무과 (☎ 054-830-6391)

의성군 조례 제 호

의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제24조”를 “ 제85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의 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85조의----- -----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